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7. ~ 9. 1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제1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국토·도시계획”을 “국토·도시계획, 석재산업”으로, “40명”
을 “60명”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에
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2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으로 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생략)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u>70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 마. (생략)

⑥ (생략)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국토·도시계획, 석재산업 -----

----- 60명 -----
가. ~ 마.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② ~ ⑥ (생략)	<u>법률 시행령」 제19조제3</u> <u>항 및 제22조에서 중앙산</u> <u>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u> <u>치도록 한 사항</u> <u>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u> <u>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석재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 ① ----- -----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석재산업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049